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 무 원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되었으나,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3.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자 수급권 이전 절차 보완(안 제59조의 2)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2.~2021. 12. 1.)

3) 행정규제 : 생 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 ④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등의 유족이 법 제57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별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등의 유족이 법 제57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별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u>
<u>④</u> 인사혁신처장은 <u>제3항</u> 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u>⑤</u> ----- <u>제3항</u> 및 <u>제4항</u> ----- ----- ----- -----.
<u>⑤</u> 공단은 <u>제4항</u> 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u>제4항</u> 에 따라	<u>⑥</u> ---- <u>제5항</u> ----- ----- ----- -----. ----- <u>제5항</u> -----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 2. (생 략) <u>⑥</u>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8417